

국제자본이동 규제에 관한 최근논의 및 전망

- ◆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파급된 원인으로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이 지목되면서 그동안 자본이동규제(capital control)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선진국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
- ◆ 자본이동규제 수단 가운데 토빈세, 중앙은행 무이자예치제도, 만기규제와 같은 직접적 방식은 국제공조의 필요성, 시장의 강한 반발, 과거 실시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채택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
- ◆ 따라서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자본이동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나 외환시장의 일시적 변동성 축소 등을 명분으로 외화포지션,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1. 국제자본이동 규제 논의의 배경

- 199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개방화가 범세계적으로 진전되면서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규제(이하 '자본이동규제(capital control)'라 함)가 아시아와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됨*

* <붙임1> “1990년대 남미국가 및 아시아 신흥국의 국제자본이동 규제” 참조

- 자본이동 자유화는 전반적인 자본효율성을 증대*시키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조차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여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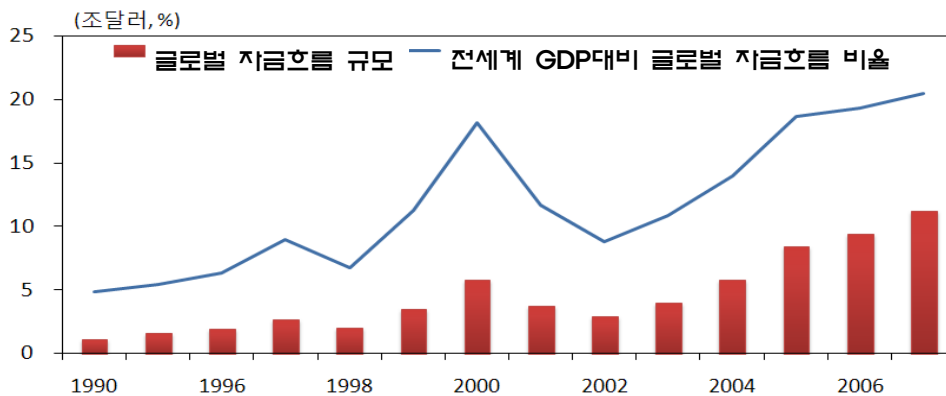
Giovanni et al, "Reaping the benefits from financial globalization," *IMF Occasional Paper* 264, 2008.

S. Edward and J. D. Ostry, "Terms of trade disturbances, real exchange rates, and welfare: The role of capital controls and labor market distortions," *Oxford Economic Paper* 44, 1992.

- 자본이동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자본이동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*

*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0년대초 IT버블 붕괴기 제외

국가간 자금이동 규모



자료 : McKinsey Global Institute

- 자본이동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아시아 등 일부 개도국에서 금융·외환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자본 자유화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*

* 태국 등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였으나 대부분 실패로 귀결. 자세한 사례는 본문 <2. 국제자본이동 규제의 방식> 참조

- 자본이동규제를 다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도국들은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한편 이를 선진국 국채에 투자한 결과 국제자본 이동 규모는 더욱 확대

□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된 원인으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지목되면서 일부 선진국들도 자본유출입 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

○ 프랑스가 G20 정상회의에서 단기 외환거래 규제를 위한 토빈세 (Tobin tax) 도입을 주장(2009.9월)한 데 이어

프랑스, 독일, 영국, 일본 등 12개국도 9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0.005%의 토빈세 과세를 검토

○ G20 재무장관/중앙은행총재 회의(2010.6월)에서도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고 위기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및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

○ IMF도 자본이동 자유화 옹호론에서 한 발 물러나 자산가격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·제한적 범위에서의 자본이동규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*

* Ostry, J. et al., "Capital Inflows : The Role of Controls," *IMF Staff Position Note*, 2010.2.

IMF, *Global Financial Stabilization Report*, 2010.4.

□ 이와 함께 그동안 긍정적 측면만 강조되어 왔던 자본이동 자유화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

○ 자본은 「고수익-고위험」을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쉬움

○ 경기상승기에는 유입이 확대되다가 수축기에 유출되는 경기순응적 (pro-cyclical) 성격 때문에 실물경기의 급변동이 초래된다는 주장*도 제기

* 104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OECD국가와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국제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을 확인(Kaminsky, G., C. Reinhart and C. Vegh, "When it Rains, it Pours : Pro-cyclical Capital Flows and Macroeconomic Policies," *NBER Working Papers* 10780, 2004)

- 또한 자본자유화에 따라 국제자본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흘러간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며(루카스 역설, Lucas Paradox)*

오히려 신흥시장국이나 세계경제가 불안해질 때 자본이 일시에 선진국으로 유출되면서 금융불안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등장

* 실제 1980~2008년 국가그룹별 자본유입을 보면 선진국으로의 유입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

	선진국 ¹⁾	개도국 ²⁾ (자본유입/명목GNI, %)
■ 총유입	8.88	3.00
□ 직접투자	2.20	2.13
□ 증권투자	3.62	0.69
□ 은행차입	3.06	0.18

주 : 1) 미국 등 18개국 2) 중국 등 19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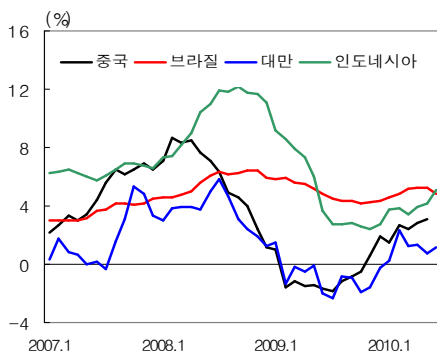
자료 : 김승원, "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," 한국은행 *금융경제연구* 421호, 2010.3.

-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신흥시장국은 금융위기 이후 유출되었던 국제자본이 최근 다시 유입*되기 시작하자 거시경제 불안을 이유로 자본이동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음

* 아시아 신흥시장국으로의 자금유입은 2008년 1,070억달러에서 2009년 2,829억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0년에도 2,72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(ADB, 2010.6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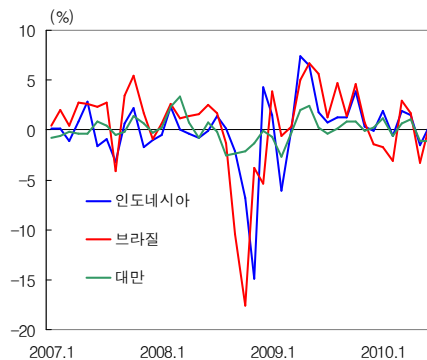
주요 신흥시장국의 물가상승률 및 통화가치 변동률

(물가상승률¹⁾)



주 : 1) 전년동기대비

(통화가치 변동률¹⁾)



주 : 1) 전월대비(월평균), 상승+ 하락-

2. 국제자본이동 규제인 방식

- ◆ 대표적인 자본이동규제 방식으로는 토빈세 부과, 중앙은행 무이자예치, 만기·유동성 규제 등이 있음

(토빈세(Tobin tax) 부과)

- 토빈세는 국제투기자금(hot money)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*으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제로 도입된 실적은 거의 없음

*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외화, 채권, 파생상품, 재정거래(arbitrage) 등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1978년 제시

- 토빈세는 무역거래 등 실물경제와 장기자본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투기자금의 이동만 규제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통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- 그러나 세율 등 구체적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어서 쉽게 도입할 수 없는 단점도 있음

— 1990년대말 아시아 금융위기로 제안된 바 있으나 국제적 합의 실패로 무산

- 최근 유럽, 중국, 일본 등이 도입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, 호주, 캐나다 등 외환시장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가 반대*하고 있으며 IMF도 부정적인 입장

* 캐나다 중앙은행은 국제금융자금 흐름의 왜곡, 특정지역의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을 우려(2010.6월)

- 국가간 견해차가 큰데다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국제공조의 응집력도 약해지고 있어 G20 의제로 정식 채택되거나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
(중앙은행에 무이자예치(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s, URR))

□ 유입된 자본의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무이자로 예치케 함으로써 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제한하는 제도

○ 주로 개도국에서 시행되었으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(IMF, 2010.2월)

— 2006.12월 태국 정부가 만기 1년 이하 2만달러 이상의 단기자본에 대해 30%의 URR을 부과하였으나 시장이 주가폭락으로 대응하자 3일 만에 철회*

* <붙임2> “태국의 2006년 국제자본이동 규제 계획” 참조
태국은 1995년에도 은행의 비거주자 바트화 계좌에 대해 동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

— 칠레 정부는 1991~98년중 해외차입에 대해 20%의 URR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고 예치비율을 30%까지 인상하였으나 효과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

— 콜롬비아도 1993~98년중 만기 18개월 이하 해외부채에 대해, 2007~08년중 해외차입 및 포트폴리오 유입에 대해 40% URR을 도입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

→ 선진국의 거부감, 시장의 저항, 효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도입여부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

중앙은행 예치제도(URR) 사례 및 평가

국가 (도입시기)	예치율	내 용	효과		
			자본유입 억제	자본구성 변화	환율상승 압력감소
태국 (1995~96)	2→7%	만기 1년 이하 바트화 예금 단기금융상품·단기차입 대규모 단기자금	있음	있음	있음
(2006)	30%	(2만달러 이상, 만기 1년 이하) 해외차입, 주식예탁증서, 투기적 성격의 직접투자	없음	없음	없음
칠레 (1991~98)	20→30%	해외차입, 주식예탁증서, 투기적 성격의 직접투자	없음 ¹⁾	있음	없음 ¹⁾
콜롬비아 (1993~98)	42~140%	해외부채 만기별 차등 부과	없음 ¹⁾	있음	없음 ¹⁾

주 : 1)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효과 존재
자료 : Ostry, J. et al., "Capital Inflows : The Role of Controls," IMF Staff Position Note, 2010.2.

(만기 규제)

-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*,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,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 송금 금지**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

* 브라질은 단기자본유입을 줄이기 위해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(36개월, 1993년)

** 콜롬비아는 직접투자자금 원금의 본국송금을 2년간 금지하였으며(2008년), 말레이시아는 증권투자자금의 본국송금을 1년간 금지(1998년)

- 비거주자가 국채나 중앙은행 채권 등을 매입할 경우 일정기간 보유*하도록 하거나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규제**

* 태국은 3개월 이상 국채를 보유할 경우만 외환거래를 허용(2006년)

** 대만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 단기금융상품 투자비율을 30% 이내로 제한(1995년 ~)

→ 국제자본 이동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으로 시장의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도입하거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

(외화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)

- 금융회사의 과도한 해외차입을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화 포지션과 유동성을 일정수준 이내로 규제

- 많은 국가에서 외국환포지션을 자기자본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외화 유동성 비율(외화자산-부채 비율)도 규제

- 실수요와 무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*

* 말레이시아는 무역과 무관한 상업은행의 스왑거래 상한을 설정(1992년)하였다가 이후 이러한 거래를 금지(1994년)

외환부문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 현황

	외국환 포지션 규제	외화 유동성 규제
브 라 질	·자기자본 60% (순포지션)	
인도네시아	·자기자본 20% (순포지션)	·외화유동자산/총외화부채 : 3%
태 국	·자기자본(Tier1) 15% (순포지션)	
콜롬비아	·자기자본 20% 이내 (롱포지션) ·자기자본 5% 이내 (숏포지션)	·외화유동자산-부채 -자기자본 50% 이내
칠 레	·자기자본의 20% (순포지션)	·외화유동자산/총외화부채 19%

→ 현재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시스템 건전화라는 명분이 있어 가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자본이동규제 방식으로 평가

(기타규제)

□ 금융회사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규제*

* 가계부문에 대한 외화대출 금지(칠레), 1천만달러 초과 외화대출의 헤지거래 의무화(인도), 기업 외화대출은 해외용으로 제한(한국) 등

□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뮤추얼펀드와 연기금, 퇴직펀드 등 자국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규제

신흥시장국 투자기관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 현황

국 가	뮤추얼펀드	연기금, 퇴직펀드
태 국		투자금액 10%이내
인도네시아	해외투자금지	해외투자 금지
브 라 질		공모투자펀드에 한해 투자금액 3%이내
칠 레		투자금액 45% 이내
콜롬비아		전체 투자금액 20% 이내

자료 : OECD(2008) 등

→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

3. 최근 국제자본이동 규제 사례

① 브라질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헤알화 가치가 급상승하자* 외국인의 자국 통화표시 채권 및 주식투자에 대해 2%의 거래세를 부과**(2009.10월)

* ■헤알/달러	<u>2008.12</u>	<u>2009.12</u>	<u>2010.1</u>	<u>2010.3</u>	<u>2010.5</u>	<u>2010.6</u>
	2.3145	1.7445	1.8950	1.7813	1.8047	1.8047

** 브라질 정부는 2008.3월에도 헤알화 강세를 막고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1.5%의 거래세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자 폐지(2008.10월)

- 또한 브라질 정부는 금융거래세 조치에 따른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예금증서(American Depository Receipt)를 국내주식으로 전환*할 경우에도 1.5%의 세금을 부과(2009.11월)

* 외국의 DR소유자가 국내에서 원주 형태로 주식을 교환하고자 신청하면 예탁기관이 해당 DR을 감소시키고 원주보관기관이 신청자에게 원주를 교부하는 행위

② 대만

- 외국인이 주식투자자금의 30% 이내에서 운용 가능한 만기 1년 미만의 자산목록에서 정기예금을 삭제*(2009.11월)

* 해외투자자금이 주식투자보다는 고금리 은행상품에 몰리자 외국인이 예치할 수 있는 상품중 금리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을 제외(이전에는 정기예금 3개월 예치 후 1회에 한해 최장 3개월 연장 가능)

- 주식매입용으로 환전한 대만달러에 대해서도 1주일 이내 사용토록 하고 국내 및 국외은행으로 하여금 고객의 외화주문을 당일내로 처리토록 하여 환율변동성을 축소(2010.1월)

③ 인도네시아

-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대내외 금리격차*에 따른 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자본의 중앙은행채권 매입시 최소 1개월** 보유의무를 부과(2010.6월)

* ■중앙은행 기준금리(%) 2008.12 2009.12 2010.1~
 9.25 6.50 6.50

** 1개월 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유통시장이 아닌 중앙은행에만 매각

④ 아이슬란드

- 리먼사태 이후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이동규제를 실시(2008.11월)하다가 단계적 완화계획을 발표(2009.10월)

— 거주자의 외화표시 증권, 펀드, 머니마켓 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동 규제 이전에 실시된 투자는 재투자시에만 허가

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제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입의 한도, 만기 등을 규제하고* 지불보증 및 상품·서비스에 대한 지불이외 현금인출 금지

* 한도는 연간 1천만 크로나이며 최소만기는 1년, 체결후 1주일내에 실행

— 국내 경제주체가 취득한 모든 외화에 대해 그 내역을 2주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

⑤ 한국

-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정, 외화대출 및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(2010.6월)

- 은행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포지션 한도를 자기 자본의 50%(국내은행) 및 250%(외은지점)로 설정
- 기존의 외화대출 중 중소기업 국내 시설자금을 제외하고 외화 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 제한
-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외화 자금관리비율은 상향조정(90→100%)하고 선물환 거래 한도 비율은 인하(실물거래의 125→100%)

4. 향후 전망

- 자본이동규제가 대부분 철폐되고 국제금융시장의 규모도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
 -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 교역협정을 맺고 있는데 동 협정에는 민간부문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
 - 1990년대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 등에서 실시했던 자본이동규제의 효과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6년 태국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른 직후 자진 철회
-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도 국제자본이동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고 있는데다

선진국과의 금리 및 경제성장률 격차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의 국제자본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

향후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일부 자본이동규제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

- 토빈세, 중앙은행 무이자예치, 만기규제 등과 같은 강력하고 직접적인 규제는 국제공조 필요성, 시장의 강한 반발, 과거 실시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에 비추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
- IMF도 인플레이션 억제 및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기 자본이동규제 필요성만을 강조

⇒ 앞으로 국제자본이동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제고, 외환시장의 일시적 변동성 축소 등의 목적으로 국한된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* 외화포지션 및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등

<붙임1>

1990년대 남미국가 및 아시아 신흥국의 국제자본이동 규제

(브라질)

□ 1993년 중반부터 단기자본 유입을 줄이기 위해 만기규제, 금융거래세, 중앙은행예치제도(URR) 등을 도입

○ 국제자본의 만기 장기화를 위해 해외차입 최소만기요건(30개월→36개월, 1993.6.16일) 및 이자소득세 면제* 만기요건(60개월→96개월, 1993.6.28일)을 연장

* 브라질 정부는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에 대해 국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

○ 해외차입,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에 대한 세금 부과

— 해외차입(1993.11.20일 3% → 7% 1994.10.9일), 비거주자의 주식투자, 채권투자(1993.11.20일 5% → 9% 1994.10.9일)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

— 이후 금융거래세 대상 범위를 모든 포트폴리오 투자로 확대

브라질의 금융거래세율

해외차입	주식투자	채권투자
3%→7% (93.11.20 → 94.10.9)	1% (93.11.20)	5%→9% (93.11.20 → 94.10.9)

— 또한 금융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*도 규제

* 콜 및 풋옵션을 이용하여 채권투자와 같이 확정수익을 얻는 거래(박스 스프레드) 등도 금지

○ 신용거래의 선지급금(anticipatory settlement)에 대해 15%의 예치의무 부과

○ 이와 같은 규제는 이후 다소 완화*되었으나 멕시코 금융위기(1995년)의 영향으로 국제자본 유입이 증가하자 금융거래세 인상 등으로 대응

* 해외차입 및 주식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폐지하고 채권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도 5%로 인하하였으며 해외차입 최소만기요건도 24개월로 축소(95.3.9)

○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되자 폐지(1997년)

(대 만)

- 외국인투자자의 만기1년 미만 정기예금, 금융상품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식투자자금의 30% 이내로 제한(1995년)
 - 단 정기예금의 경우 3개월 예치 후 만기에 3개월까지 1회 연장 가능

(태 국)

- 1995.8월부터 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거주자 예금에 대해 중앙은행 예치의무를 부과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를 실시
 - 비거주자의 1년 이하 바트화 단기예금에 대한 예치율 인상(2%→7% 8.8일)
 - 이후 비거주자 소유 금융회사 단기상품(1995.12월)과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 차입금(1996.4.19일)도 예치대상에 포함
 - 예치율 인상 이외 은행의 포지션 한도설정, 해외채무 만기 장기화 등의 규제 실시
 - 금융회사의 외화포지션의 한도를 비대칭적으로 설정*하고 은행의 최소 적정자본 수준도 높여 해외차입 억제를 유도
 - * 금융회사의 외환 숏 포지션 한도를 롱 포지션보다 낮게 설정
 - 외환 거래 및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험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외채무의 만기를 늘리도록 창구지도
-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실시
 -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규제로 인해 국내와 역외에서 바트화 환율이 상이하게 형성(이중환율제)
 - 역외 바트화포지션을 늘리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와 바트화표시 자산 매각 이익의 대외송금 금지

(콜롬비아)

- 1992년 일부 경상수지 계정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수지 및 비금융서비스수지에 대해 10%의 세금을 부과
- 1993년부터 중앙은행 예치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유입을 규제
 - 1993.9.2일 만기가 18개월 이하인 해외부채의 47%를 1년간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의무 부과
 - 1994.8.12일에는 만기(1~60개월)에 따라 최소 42%에서 최대 140%의 예치 의무 부과
 - 이후 예치율을 점차 낮추다가 2000.5.4일 폐지

(말레이시아)

- 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통화정책 수행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자 1994년부터 금융회사 포지션 규제, 지준예치 등을 통해 자본유입을 규제
 - 은행의 외환관련 거래 및 포지션을 직접 규제
 -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투자 금지(1994.1.17일), 상업은행의 무역과 무관한 스왑거래의 상한을 설정(1992.6.1일)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거래를 금지(1994.2.23일)
 - 비대칭적 오픈 포지션 상한 설정으로 대외부채 규모 제한*(1994.1.17일)
 - *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부채는 제외
 -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은행에 예치한 링기트화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요구(1994.2.2일)

□ 1998.9월에는 러시아의 디폴트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규제하고 령기트화 매매를 제한

○ 비거주자의 자금 송금 및 거주자의 해외투자 등을 규제

— 비거주자의 증권 투자자금의 본국 송금을 12개월 동안 금지하고 대외계정 예치금을 이용한 외환거래 금지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제 실시

(칠 레)

□ 1989년 초부터 시작된 자금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1991년부터 한계지준 제도, 만기규제 등을 통해 자본 유입을 규제

○ 해외차입의 경우 최대 1년까지* 중앙은행 예치의무를 부과하고(예치율 20%, 1989.6.17)하였으며 이후 예치대상 확대 및 예치율 인상

* 차입 만기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,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만기까지 적용

— 만기가 연장되는 예치제 도입 이전 차입금(1989.7월)과 은행 예치 외화 자금(1992.1월)에도 예치제도를 적용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예탁증서(1995.7월)와 투기적 성격의 해외직접투자(1996.5월)까지 확대

— 예치대상 범위 확대와 별도로 예치율을 20%에서 30%로 인상* (1992.5월)

* 1992.5월에는 일부 거래(회사가 직접 해외에서 차입하는 경우 등)가 제외되었으나 8월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인상

○ 직접투자뿐 아니라 증권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90일~1년 범위내의 최소만기요건 적용

○ 기업의 해외차입을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(1994.5월)

○ RP거래를 이용한 지준적립에 대한 암묵적 세금(implied tax)*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 RP거래 금리 인상**

* 지준 부족시 중앙은행과 RP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RP거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지준적립에 대한 부담이 가중

** LIBOR+2.5%, 1992.8월 → LIBOR+4%, 1992.10월

<붙임2>

태국의 2006년 국제자본이동 규제 계획

- 2006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자본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여 바트화 가치가 상승하자 자본유입을 통제
 - 1년 이하 2만달러 이상의 투기자금* 유입에 대해 1년간 30%의 중앙은행 예치의무를 부과(2006.12.18일)하고 1년내에 자금을 회수할 경우 예치금의 2/3만 지급
 - * 경상거래, 직접투자 등 실물거래 자금과 주식 투자자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
 - 금융회사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(2006.12.4일)
 - 3개월 이상 국채를 보유할 경우에만 국채투자를 위한 비거주자의 외환거래를 허용
 - 비거주자로부터 바트화 차입 최소만기 연장(3개월 →6개월)
 - 규제회피를 위한 채무증권(Debt Securities)의 거래자제를 요구
- 1년 이하 단기자본에 대해 중앙은행 예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본이동 규제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3일만에 철회 (2006.12.19)
 - 상품 및 서비스 거래용도 이외 2만달러 이상 외화예금에 대해 30%의 예치율이 적용되며 1년 안에 인출할 경우 인출액의 33% 벌금 부과
 - 조치 발표이후 태국주가가 15%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 지자 3일만에 조치를 철회